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023. 09. 11.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3. 8. 14. 신동원 의원 발의 (2023. 8. 21.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하려는 지역이 많고,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이 많으므로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
- 그로 인해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 이에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통해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추진의 공익성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6조의2)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비사업정책자문위")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3년 8월 14일 신동원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안 제86조의2) 개요						
목적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합리적인 정책추진 도모						
자문 사항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결정 사항 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 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수: 15명 이상 25명 이내 ※ 회의는 자문사항별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주택정책실장 /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 위원: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구성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정책자문위는 서울시 정비사업 분야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1)로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므

¹⁾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그 의사는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됨.

- 로²⁾,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요건³⁾ 및 절차⁴⁾ 등이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정비사업정책자문위는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익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각종위원회 조 례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

²⁾ 각종위원회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u>하기</u>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³⁾ 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u>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 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⁴⁾ 각종위원회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 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 부하여야 하다.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서울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의 경우 중요 건축정책의 심의, 자치구 또는 관련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5)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내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주택정책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6)에 따라주택정책자문단을, ▲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에 따라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중에 있음.

[본조신설 2023.3.27]

^{5)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 ·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 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 문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

○ 현재 서울시가 소관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주요 사무는 다음 표에서 볼수 있듯이,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법령·조례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중요정책의 입안·결정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들어 급변하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비사업장에서의 공사비 갈등해결, 재개발 공모 후보지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에 따른 맞춤형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마련 등 정비사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함에 있어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정비사업 관련 주요 사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주요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민간·공공 정비사업 구역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 투기방지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권리산정기준,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 등)
-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지원 관련 규정 및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 회계규정, 행정업무 규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시공자 선정기준 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및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일몰제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출처: 주택정책실(주거정비과) 내부자료 정리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 다만, 기존에 설치된 자문단과의 성격·기능의 중복 또는 차별성을 살펴볼 때,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실(주거정비과)이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현재 주택정책실(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책자문단' 및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일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비사업정책과 관련된 자문결과가 주택·건축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 자문결과와 상이한 경우 정책결정 및 집행상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문단의 성격과 기능이 상호중복되지 않도록 자문단간 역할 정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 유사분야 서울시 자문단 현황 >

	건축정책위원회	주가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자문단	도시계획 정책지문단	정비사업정책 자문위원회(안)
자문단 구성여부	미구성	(해당없음)	미구성	구성	_
	건축기본법 제18조			_	_
근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 제23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제86조의2
시행일	2010.7.15.	2012.12.31.	2023.3.27. (~2025.3.26.한시)	2013.10.4.	_
위원수	~30명	~15명	20명~25명	25명~30명 (3분의1이상은 도시계획위원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	15명~25명
위원장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 (*총괄건축가)	시장	행정2부시장	외부 전문가 중 호선 (*총괄건축가)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와부전문가 중 <u>화</u> 선	와부전문가 중 <u>화선</u>	주택공급기획관
자문위원 분야	시의원, 건축,도시,문화 등 전문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대상계층 대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전문가	-	도시계획(도시경관, 도시설계,교통 등), 인문사회(문화,미래 ,역사,관광 등), 시의원	시의원, 교수, 변호사건축사도시 계획기술사 등 전문가, 공무원 등
시의원 위원	위촉 (2명)	위촉 (3명)	-	위촉 (3명)	위촉
소관부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회담당관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출처: 전문위원실 정리(2023.8.31.기준)

- 한편, 최근('23년 3월) 조례 개정8)을 통해 주택정책 분야 자문기구로서 근거가 마련된 '주택정책자문단'은 '23년 9월 현재까지 위원 미구성 등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택정책실은 향후 조례상 근거 가 마련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정책자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임.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기에 앞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특수성, 이해 및 갈등구조의 복잡성, 고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유사분야 자문단(주택정책자문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등)이 소관부서별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로 설치·운영중인 가운데 부서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자문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는 각각의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둔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건축, 도시계획, 주택, 정비사업 등 도시정책분야의 상호 연관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입 법	조 사	관	한승윤	02-2180-8207
입 법	조 사	관	최지현	02-2180-8216

⁸⁾ 조례 제867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일: 2023.3.27.)

[붙임1] 관계법령(p.9)

[붙임2] 최근 5년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회의 운영실적(p.13)

붙임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 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인가 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 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3명
 -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4.]

-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다.
-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 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7.19〉
- <u>④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u> <개정 2018.7.19>

붙임2 최근 5년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회의 운영실적

■ 2023년

연번	구분	안 건 명	자문일자	비고
1	정례회의	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논의과제 선정	03.28.	
2	자문회의	「2040 서울시 경관계획」수립 방향에 대한 자문	04.25.	
3	규제개선 지원단회의	현장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 「2030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부문)」 관련	00.00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제도·운영 관련 개선방안	06.22.	
		- 도시계획 관련 사업 위원회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 2022년

연번	구분	안 건 명	자문일자	비고
1	합동 워크숍	주요 정책에 대한 가치공유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합동 워크숍	12.21.	

■ 2021년

연번	구분	안 건 명	자문일자	비고
1	공간계획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1차)	02.08.	
2	분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2차)	07.20.	
3		주택공급 확대 관련 현안회의	02.05.	
4		높이관리기준 현안사항	04.19.	
5	는 기계성)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사항 등(1차)	05.13.	
6	도시계획 제도분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사항 등(2차)	05.31.	
7	/네스턴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1차)	09.06.	
8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2차)	09.15.	
9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10.08.	

■ 2020년

연번	구분	안 건 명	자문일자	비고
1	고기자케브리	동북권(망우)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계획	05.20.	
$\frac{1}{2}$	- 공간정책분과 - (1차~3차)	동북권(미아)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계획	06.03.	
3		동북권(성수)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계획	06.26.	
	도시계획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도시건축혁신 방안(강병근 교수)		
4	분과	오늘날 역세권 개발의 의의와 정책방향(이승일 교수)	06.23.	
	(1차~3차)	광역경제권 공간전략 및 서울시 도시공간구조(구자훈 교수)		

연번	구분	안 건 명	자문일자	비고
5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10.00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12.03.	
6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12.10.	
	미래서울	자율주행시대 주차장의 변화와 주치수요관리 정책(김원호)		
7		코로나 이후의 도시정책(김현수)	06.25.	
	어젠다분과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도시복잡계 빅데이터 활용(이희정)		
8	(1차~2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 도시계획 과제와 정책방향	08.21.	

■ 2019년

연번	구분	안 건 명	자문일자	비고
1	전체회의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과제와 추진방향 (김인희 박사)	03.22.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의 산업 육성전략 (홍진기 박사)		
0		분단과 냉전시대의 서울 VS 평화협력시대의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와 건축 (안창모 교수)	00.10	
2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지 활용과 확대방안(이은희 교수)	02.18.	
		2019년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종합계획팀장)		
	미래서울	도시건축 혁신방안 (종합계획 팀장)	00.00	
3	어젠다분과	미래서울 어젠다분과 위원 발표자료(8건) 요약 (김상일박사)	03.08.	
	(1차~5차)	중심지와 경계의 맥락과 연계 (이창수 교수)		
4	(174 074)	구간의 도시기본계획 성과평가 (김상일 박사)	04.1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방향 (이주일 박사)		
5		서울-평양간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현황	06.14.	
6		도시공간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09.20.	
7		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연구	12.23.	
8	도시계획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도화 방안	04.13.	
9	체계분과	시범지역생활권 실행계획(면목, 응암생활권지역)	06.18.	
10	(1차~3차)	도로공간 입체개발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08.3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04.05	
11	F7]0] Q	높이관리 기준 주요이슈 및 해외사례 검토	04.25.	
12	토지이용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방향	07.25.	
	관리분과	고층주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병리		
13	(1차~2차)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규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	12.10.	
		해외 주요도시 높이기준 비교 연구		
14	공간정책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07.16.	
15	분과 (1차~2차)	영등포 여의도 도심관리기본계획	10.01.	